

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조례(개정조례안)

| | |
|----------|----|
| 의안 번호 | 97 |
|----------|----|

제출연월일 : 2003년 월 일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□ 제안이유

-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시적인 자금난을 해소해 주기 위해 창업및경쟁력강화사업지원자금 등 수시로 자금지원 신청을 받아 지원·결정해야 하는 경우 응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자 함

□ 주요골자

○ 상위법령이 개정되어 관계법령 변경

- “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”을 ⇒ “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”으로 함

○ 응자심의위원회 심의 생략

- 응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응자대상금액 및 응자금 액을 결정하던 것을 ⇒ 창업및경쟁력강화사업지원자금등 수시로 지원·결정해야 하는 자금의 경우 응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도록 함

- 의안전문** : 따로 불임
- 신구조문 대비표** : 따로 불임
- 관계법령 발췌** : 따로 불임

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증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제1조증 “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”을
“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”으로 한다

제12조증 “ 다만 현지 실사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”를
“다만, 창업및경쟁력강화사업지원자금 등 수시로 자금지원신청을 받아 지원·
결정해야하는 경우 읍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”로 한다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
관계법령 발췌

□ 지방자치법

- 제133조(재산 및 기금의 설치)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,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
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, 자금의 설치,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
 ③ 제1항에서 “재산”이라 함은 현금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

□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

- 제3조(구조개선 지원 계획 등) ① 정부는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규모·경영기법 또는 생산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의 법인전환·기업의 합병·공동사업·사업전환·사업장의 이전·경영합리화 등 중소기업의 구조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
 ②~④(생략)

□ 중소기업청지시(중소기업청 소기55478-467호 '02. 12. 26)

“자금지원을 결정함에 있어 음자심의원회 운영 원칙적으로 금지, 단 정책결정이나 심층검토가 필요한 경우”로 한정